

의안번호	제 5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」에 이관하고,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는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제7조)
-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교부금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문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」로 이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”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”로, “리·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리·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”을 “리·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”로 한다.

제6조·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7조·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1항 중 “법 제72조”를 “법 제143조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10조) 중 “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”을 “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시장·군수는 읍·면·동장 또는 리·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리·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징수교부금)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·군에 매 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세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-----.</p> 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-----리·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 <후단 삭제></p> <p>③ ----- 리·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체납액(시·군세를 포함한다)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. 이 경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(시행규칙) (생략)</u></p>	<p><u>제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-----</u> --.</p> <p><u>제8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기본법

제5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(稅目), 과세대상, 과세표준, 세율,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1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
2.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지방세기본법시행령

제12조(서류송달의 방법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.